

「規制區域」內 林野去來 區域內 居住者만 可能

耕者有田原則 林業에 適用은 無理

- 不在山主는 農地의 不在地主와는 概念 달리해야 -

山林法이 지난해 년말 林野賣買證明制 實施를 骨字로 하는 内容으로 改正되고 그에따른 施行令등 下位規程들이 整備되어 7月14日부로 發効케 되므로써 0제 林野賣買證明制 實施는 全國의으로 施行하게 된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國土利用管理法과의 관계에 있어 「規制區域」내에서는 당해 規制區域內의 居住者가 아니면 林野는 買收自體가 不可能하도록하는 所위 一般農耕地에서와 같이 耕者有田의 原則을 適用케 하고 있음으로써 많은 問제점을 낳고 있다.

뿐만아니라 規制區域내의 居住者라 하더라도 國土utilization管理法에 의한 許可와는 別途로 山林法에 의한 林野賣買證明을 發給받아야 하는 二重의 規制로 번거로움과 必要以上의 規制를 加하고 있어 法의 衡平에도 어긋나게 하고 있다.

現在의 規制區域은 全國土의 41%以上을 占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增加 趨勢이고 보면 그中に 大部分이 山林일진대 앞으로의 林野賣買는 完全 遮斷되었다고봐도 適言이 아니며 따라서 賣買가 없는 山林은 財產의 價值로서의 機能이喪失케 되므로써 林業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山林經營의 特性을 理解치 못한 處事로써 得보다는 失이 크고 林業의 장래를 심히 우려케함에 따라 本會는 다음과 같이 關係部處와 要路에 陳情한다. ——— 편집자

林野賣買證明制 實施에 따른 陳情

우리 協會는 不動產投機抑制와 土地公開念에 立脚한 各種 政府施策에 대하여 根源의 으로 反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林野去來에 關聯하여 國土utilization管理法과 山林法과의 關係에 있어 다음과 같이 陳情하오니 林業의 活性화를 위하여 早速히 改善되도록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情內容

國土utilization管理法 第21條의 4 (土地去來 許可基準) 1項2號 “다”目에 의하면

『規制區域內에 居住하는 農漁民이 當該 規制區域 内에서 農業, 畜産業, 林業 또는 漁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일때』로 限定하고 있는 바

1. 規制區域內에서는 同 規制區域內의 居住者가 아니면 林野를 買收할 수 없고
2. 規制區域內 居住者라 하더라도 林野를 買收하고자 할 때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土地去來許可와 山林法에 의한 林野賣買證明을 發給받아야 하는 二重規制로 法의 衡平原則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重複 規制를 해야 할 事案도 아니라고 思料되며
3. 山林經營의 主體는 그 性格上 農·畜産業과는 달라서 耕者有田의 原則을 適用하여 반드시 區域內의 所有山主라야 할 理由는 없으며, 實際的으로 私有林의 경우 不在山主가 全體 山主數의 35%, 面積으로는 43%를 占有하고 있다는 事實을 默過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한편 不在山主中 많은 사람은 累代에 걸쳐 相續을 받아 所有 및 經營하여온 善良한 山主들로써 不在山主가 모두 不動產投機者들인 양 驚倒함은 危險한 發想이고 그들은 오히려 오늘날의 國土綠化의 偉業을 達成하는데 一翼을 擔當한 山主들이라는 點을 認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더욱이 林業은 長期性이고 低所得의 構造的 脆弱點 때문에 山林經營을 零細한 農漁村住民에게만 期待할 수는 없는 實情이므로 私有林 所有構造改編과 함께 經營活性化를 위해서는 都市資本을 誘致해야 할 必要性도 있으므로 林野去來에 있어 買收者를 반드시 區域內 局住하는 所有山主로 規制할 必要는 없다고 判斷됩니다.
6. 한편 政府에서 指定한 規制區域은 現在 國土面積의 41%에 該當하며 今後 계속 擴大指定될 展望이므로 國土利用管理法의 改正없이는 앞으로 林野去來는 完全 遮斷되므로서 私有財產權行使를 制度의으로 막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 뿐만 아니라 私有林의 經營活性化를 가로막아 林業은 雪上加霜으로 全滅될 것임이 明若觀火합니다. 林業도 國家의 主要產業임을 勘案하시어 改善해 주시것을 建議합니다.

1990. 8.

社團法人 韓國篤林家協會

會長	權五振	全北支部長	李龍鎬
京畿支部長	李用煥	全南支部長	崔寄泳
江原支部長	林東弼	慶北支部長	金元植
忠北支部長	李陽雨	慶南支部長	朴照永
忠南支部長	柳崇烈		